

5·18단체-시민단체 갈등 격화...해법은 없나

부상자·공로자회, 다음달 특전사동지회와 민주묘지 참배 앞두고 시끌
범시도민대책위 “보여주기 행사 그만” 반발 속 43주년 ‘두쪽 행사’ 우려
직접 만나 의견 조율하고 진정한 사과·양심 고백 있어야 시민들도 공감

일부 5·18 공법단체와 광주 시민사회 단체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오는 5월 21일 도청 집단 발포일에 맞춰 특전사동지회와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은 11일 “물리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특전사 참배를 막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당장 한달여 뒤인 5월 17일부터 추모제, 전야제 등 제43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가 시작되는데 이대로 가면 공법단체 따로, 시민단체 따로 ‘두쪽’ 난 행사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행사를 통해 전 국민에게 오월정신을 전파하기는커녕 오월 단체 내부 갈등만 보여주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오월정신자키기 범시도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1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에 ‘2·19 공동선언문’ 폐기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2월 19일 공법단체가 특전사동지회와 ‘용서와 화해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데 반발해 광주·전남 지역 194개 시민단체가 모여 결성한 기구다. 이들은 출범 이후 두 달여 기간동안 두 공법단체에 대국민선언문 폐기를 촉구해 왔다.

대책위는 이날 “특전사동지회는 대국민선언문에 사과를 빠뜨린 채 자기 주장만 담았는데, 두 공법단체는 이를 지적하는 이들에게 ‘당사자 일이나 신경쓰지 말라’며 광주 공동체를 무시하고 당사자주의만 앞세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두 단체와 특전사동지회는 보여주기식 행사만 열지 말고 광주 시민들에게 진정한 사과, 진실 규명을 위한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5월 중 열리는 제43주년 5·18 기념행사에서도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대책위에 속해 있는 5·18행사위원회가 지난달 두 공법단체를 행사 참여 단체에서 제명할 뒤로도 양 측이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보존처 예산을 받아 진행하는 공식 행사인 추모제와 민주기사의 날, 부활제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이밖의 행사는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내년부터는 ‘법대로’ 공법 단체가 여는 공식 행사만 5·18 기념행사로 인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갈등의 원인으로서는 두 공법 단체가 광주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대국민공동선언을 강행하고,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판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이 꼽힌다.

당초 공동선언문에 특전사들의 사죄가 명시되지 않은데다 공동선언식 또한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성급하게 진행됐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공동선언 이후 정례화하겠다는 계엄군 증언회는 단 한 차례 여는 데 그쳤으며, 그나마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 조사를 수차례 받았던 김귀삼(68)씨를 초청해 ‘행방이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더구나 두 공법단체는 공동선언문을 수정하거나 추가 사죄 등을 이끌어낸 바 없는 것으로 확인

돼 논란을 키우고 있다.

5·18 원로들은 잘잘못을 떠나 서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 측이 공동선언식 이후 대화나 소통의 자리를 한 번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므로, 서로 직접 만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은 “공법단체와 시민단체 간 해묵은 갈등과 상호 불신 때문에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서로 적, 원수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며 안고 가는 등 화합하는 모습으로 오월 행사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주택까지 번진 강릉 산불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불 3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11일 강릉시 난곡동의 한 아산에 있는 주택이 불에 타고 있다. 강릉에는 강릉경보와 건조경보가 동시에 내려져 있었다. /강원일보=권태명기자

고흥 ‘웃놀이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피해자 명의 역대 생명보험 가입했다

보험금 노린 살인 가능성
구속영장 다시 신청키로

고흥 ‘웃놀이 방화 살인’(광주일보 3월 24일자 6면) 피의자가 피해자 명의의 역대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

고 경찰로부터 한 차례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고흥경찰은 지난달 20일 살인 혐의로 입건된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 재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고흥군 녹동읍 한 마을 컨테이너 박스에서 내기 웃놀이를 하던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7개월여 전인 지난해 4월께 피해자 B(70대)씨가 생명보험(보장 범위는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시 2억원, 질병으로 인한 사망시 5000만원, 후유 장애시 1억원)에 가입했으며, 보험금 수령인을 ‘고흥주’ 명목으로 A씨로 지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A씨 주도로 생명보험에 가입했으며, 매달 23만원 가량의 보험금 또한 A씨가 납입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B씨가 보험 가입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해 A씨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는 내기 웃놀이를 하다 만난 사이로, 따로 밥이나 술을 같이 할 정도로 친한 관계가 아니다”면서 “B씨가 이혼한 아내, 자

녀 등 가족과 별다른 교류나 왕래 없이 혼자 살고 있고, B씨가 가끔 농장 일을 도와주기도 해 혹시 몰라 생명보험을 들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23일 검찰로부터 ‘증거 불충분’ 등 사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당한 뒤, 보완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보험 가입을 하게 한 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으나 인과관계를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며 “보완수사를 통해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아내 폭행 숨지게 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선고

사소한 오해로 37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를 무참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3부(재판장 박성운)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8년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주거지역인 목포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사망 당시 74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돈이 보이지 않자 ‘아내가 꺼내가고 모른 척 한다’고 오해해 집안에서 B씨를 둔기류로 때리고 폭행을 피해 이웃심으로 도망가자 쫓아가 무참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부터 “손과 발로 때렸을 뿐 둔기를 이용해 폭행한 적이 없고, 겁만 주려했을 뿐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철제 둔기류에서 B씨의 혈흔과 DNA가 확인된 점,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서나 확인될 정도의 극심한 다발성 손상이 확인된 점에서 미필적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군부대 TV 수신료 부과 항소심도 ‘부당’ 판결

범일이 항소심에서도 군부대 내 TV 방송수신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정부가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군부대 내 TV 수신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수신료 부과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유지하고 한국방송공사(KBS)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한전이 패소했지만, 보조장기인 자격인 KBS측이 항소를 제기했다.

한전은 지난 2016년 대구 공군 제1전투비행단 영내에 TV 수상기가 21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수신료를 부과해오다 지난 2020년 영내 독신자숙소에도 수상기가 21대 있다는 것을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한전은 방송법상 면제되는 ‘영내’라는 의미는 ‘군의 임무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지역에 한정된다는 주장을 내세워 266만 5000원의 수신료를 부과했다.

결국 정부는 한전측을 상대로 수신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한전 분사가 있는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정부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한전측이 수신료 부과에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을 뿐 아니라 비행단 독신-외래자 숙소도 군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인 만큼, 숙소에 보유하고 있는 수상기는 등적이 면제되는 수상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영내의 의미를 장소적 개념으로 축소 해석할 필요가 없고, 군 부대 내 설치된 수상기가 ‘공공 또는 공공용’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수신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당지점, 통광지점, 각학지점